개인채무자보호법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리움에셋대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 또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 중인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에 대해 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 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원금·이자 일부 감면 등 (개별 심사)

2. 요청 처리 기간 중 추심 중지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3. 연체이자 부담 완화

원금 5천만원 미만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5. 연락제한 요청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재난·사고 시 추심 유예

재난,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사고 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추심 유예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요청 방법 및 문의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2-1, 204호 주식회사 리움에셋대부 채무조정 담당
이메일	info@liumasset.com
전화	010-2060-4845 (평일 10:00–19:00)

※ 세부 적용 요건과 예외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